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0일, 정희용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개정안은 제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 등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명령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명령 또는 사육 제한명령과 관련해서 ① 가축 처분이 어려운 경우 축산농가가 장기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② 사업 특성상 사육 재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나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폐쇄명령 또는 사육 제한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가축방역에 있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가 보다 이행가능성 높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① 의무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②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이중 후자에 해당함.

제재처분 대체 성격의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정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원래의 제재처분을 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과징금의 목적 및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안 제19조의3제1항에서 이러한 목적 및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사유 중 “가축처분의 곤란”은 일반적으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한 사정으로서, 제재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인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기본법」 제28조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징수 사항, ⑤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의 다섯 가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③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

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⑤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안 제19조의3제4항에서 과징금 수입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
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한
정하는 유사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징수한 과징금의 사
용주체를 「축산법」 제25조의2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예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가축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징금 납
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동의하나,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의 경우 해당 농가에게 영구히 축산업을 못하
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와 달
리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곤란해 보인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